

비정년트랙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5.02.03.		16		
2	2015.03.09.		17		
3	2016.10.28		18		
4	2017.11.2		19		
5	2018.10.22		20		
6	2019.8.2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비정년트랙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및 정의) 비정년트랙교원이라 함은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으로서의 임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원으로서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로 구분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

1.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최초 임용 시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채용되어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2. 교육중점교수라 함은 교육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교육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3. 연구중점교수라 함은 연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17.11.2>

제3조 (임용자격) ① 비정년트랙교원은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 교육중점교수 중 어학을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은 당해 과목의 언어(영어 또는 제2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로 하고, 외국어 교육 담당을 위한 비자 또는 국내취업가능 비자와 TESOL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개정 2018.10.22>

②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개정 2018.10.22>

③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력 산정 시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기준 완화가 가능하다.<개정 2018.10.22>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이 1회 이상인 자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자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이내 완화)

제4조 (계약임용절차) ① 신규계약임용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2조를 적용하며, 재계약임용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 7조 내지 제 7조의 2를 적용한다. <개정 2018.10.22.>

② 비정년트랙교원의 최초 계약임용 만료에 따른 재계약 임용 년수는 2년으로

하며, 재임용평가 기준은 『비정년트랙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9.,2018.10.22>

- ③ 산학협력 및 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 하에 업적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재임용 할 수 있다.
- ④ 교원인사규정 제47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업적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재임용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책임강의시간) 비정년트랙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2>

제6조 (직위 및 처우) ① 비정년트랙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처우와 관련한 사항은 계약조건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8.26>

③ 비정년트랙교원은 학부(과), 전체교수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신설 2016.10.28>

제7조 (제출서류) 임용 제출서류는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를 따른다. 단, 어학을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지인등의 추천서<개정 2018.10.22.>
2. TESOL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 사본
3. 여권사본(본인 사진과 국적, 여권번호 및 입국비자가 있는 부분)
4. 건강진단서(HIV 및 약물검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8조 (준용)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내규폐지)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외국인 어학교원 임용 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며, 2015년 1학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